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1/2

심의일자	2017.12.05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대림지구 특별계획3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 / 동작구 신대방동686-48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7-33-1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의결
<p>[심의 내용] 건축 + 교통 심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아래 지적사항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의결되었으며, 지적사항의 반영여부는 추후 본위원회에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. ■ 참고로 본 건축위원회 심의는 「건축법」 제4조 및 「도시교통정비촉진법」 제 17조에 의한 건축·교통에 의한 건축 관련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심의로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. <p>< 건축 분야 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□ 건축계획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고층부와 저층부의 입면이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므로, 통일된 이미지를 갖도록 개선하기 바람. ○ 공공보행통로상의 기둥 배치를 최소화하고, 상부의 건축물을 축소하여 보행환경이 개선되도록 검토 바람. ○ 공개공지1의 면적 산정에서 건물 진출입을 위한 통로부분 면적을 제외하기 바람. ○ 지상1층 어린이 도서관은 이벤트 광장, 근린생활시설 등 주변 입지조건을 고려하여 위치를 조정하기 바람. ○ 지하2층 영화관(3,4,5,6관) 복도 측 출입구에서의 피난동선이 일 방향으로써 대피에 문제가 있어 보이므로 재검토하기 바람. ○ 근린생활시설(일반음식점)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가 적합한지 확인 바람. □ 구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트랜치 커버의 내구성, 침하에 의한 내구성능 저하가 우려되므로 시공방법 및 사양을 도면에 표기하기 바람. ○ 지표면 조도 B등급 적용에 대하여는 해당 지역의 건축물 현황을 조사하여 그 근거를 제시하기 바람. ○ 내진, 내풍 설계 관련사항은 건축주, 시공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개요에 명시하기 바람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- 계속 -</p>			

2017.12.05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

건축위원회 심의의결조서

2/2

심의일자	2017.12.05(화)		
사업명/신청위치	대림지구 특별계획3구역 주거복합 신축공사 / 동작구 신대방동686-48번지 일대		
의결번호	2017-33-1	심의결과	조건부(보고)의결
[심의 내용] 건축 + 교통 심의			
〈 건축분야 〉(계속)			
<input type="checkbox"/> 구조(계속)			
○ 냉동탑차의 차량하중은 실시설계 시 반영하기 바람.			
○ 풍환경 사전검토 자료를 제시하고, 풍환경 실험 전 현 계획안의 문제여부를 검토하기 바람.(전문가 검토 확인서 제출)			
<input type="checkbox"/> 방재			
○ 지하주차장 화재 시 연기 배출과 관련한 심의의견의 조치결과 내용을 보완하여 관련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여 제시 바람.			
○ 과압 방지를 위한 제연용 송풍기 관련 내용을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시 바람.			
○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피난동선 및 계단 이용계획을 재검토 바람.			
○ 소방성능위주설계 사전심의 내용을 반영한 계획을 관련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하기 바람. 끝.			

2017.12.05.
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